

韓國의 公正去來政策에 관한 研究*

丁 炳 休**

<目 次>

I. 序 論
II. 公正去來政策의 導入—「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의 制定
III. 公正去來政策의 確立—「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의 制定
IV. 公正去來政策의 強化—「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의 改正
V. 日本의 經驗
VI. 公正去來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I. 序 論

오늘날 세계적으로 公正去來法(흔히 獨占禁止法, 反트러스트法, 制限的 去來慣行法, 競爭制限禁止法, 競爭促進法, 競爭法 이라고도 말하는데,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관례적인 用法에 따라서 公正去來法이라고 부른다)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39個國에 이르고 있다. 先進自由主義諸國의 集團인 OECD에서는 24個의 加盟國 중에서 21個國이 公正去來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갖지 않은 나라는 이탈리아, 터키, 아이슬란드 등 3個國에 불과하다. 또한 EC, EFTA 등의 經濟統合體의 設立條約 중에도 公正去來條項이 포함되고, 加盟國間의 去來에 適用되고 있다. OECD 加盟國이 아닌 나라로는 韓國을 비롯하여 印度, 泰國,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유고슬라비아, 이스라엘 등 18個國이 公正去來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公正去來法의 規制內容이나 規制節次는 그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獨占이나 카르텔의 弊害를 規制하고, 自由로운 競爭을 促進하여 資源의 最適配分과 一般消費者의 利益을 確保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理念에 있어서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특히 資本主義的 經濟體制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公正去來法은 오늘날에 있어서 自由로운 市場經濟體制와 밀접하게 關聯되고, 그 基本

* 이 글은 文敎部로부터 學術研究助成費의 支援을 받았음.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敎授

法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經濟社會에 있어서 市場經濟體制에 대한 신뢰와 지지는 점차로 확대 강화되고 있다. 1970年代 後半부터 시작된 西方諸國에 있어서의 國營企業의 民營化나 政府規制産業의 規制緩和措置는 이것을 나타낸다. 또한 社會主義諸國의 企業經營에 있어서의 利潤概念의 導入이나 企業의 自律性 擴大의 움직임, 특히 中共의 대담한 商品經濟로의 移行은 적어도 결과적으로는 市場經濟體制로의 接近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市場經濟體制에 있어서는 企業이 利潤을 目的으로 하여 營業活動을 하는 自由와 消費者가 각자의 嗜好에 따라서 商品을 選擇하는 自由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企業의 營業活動의 自由는 필연적으로 企業間的 競爭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 市場經濟體制에 있어서 競爭의 存在는 당연한 전제로 되고 있다. 競爭의 存在가 消費者의 새로운 욕구에 부응하는 企業活動을 촉진하고, 이것에 의하여 新商品, 新技術, 新시스템의 開發이나 經營의 合理化 등을 위한 動機를 賦與하고, 또한 이러한 競爭을 통하여 不當한 高價格은 排除되고, 非能率의 企業은 淘汰되고, 經濟組織은 效率的으로 運營되고, 消費者의 利益은 保護된다.

그러나 자유로운 企業의 營業活動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競爭이 반드시 유지되지는 않는다. 自由企業體制下에서의 企業의 大形化, 寡占化의 傾向, 利潤의 安全과 擴大를 목적으로 하는 카르텔화 傾向 등은 흔히 競爭을 排除하고 制限하는 傾向과 그 弊害를 생기게 한다. 그러므로 市場經濟體制는 營業의 自由를 尊重하면서 이 體制가 적절하게 運營되게 하기 위한 基本的 公共政策으로서 競爭을 維持하기 위한 政策, 즉 公正去來政策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2次大戰後의 公正去來政策의 커다란 흐름을 概觀한다면, 公正去來政策의 先頭走者였던 美國은 다만 카르텔과 같은 企業行動의 規制에 그치지 않고, 寡占이나 獨占企業의 出現에 의하여 市場構造 자체가 反競爭의 으로 되지 않도록 合併이나 獨占의 規制에 力點을 두었으며, 여러가지 競爭制限의 違法行爲의 類型을 명확하게 하고, 상당히 확일적이고 강력한 規制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美國經濟가 그 압도적 지위를 1970年代 中반에 상실하고 日本과 유럽과의 競爭에 직면하여 技術革新 등에 의하여 競爭이 激化되는 것을 背景으로 하여, 1980年代에 들어오면서 美國은 이제까지의 公正去來政策을 재검토하고, 「條理의 原則」(rule of reason)을 適用하여 經濟의 實相에 부응하는 公正去來政策을 運用하기 위한 커다란 方向 전환을 하고 있다. 이에 反하여 유럽諸國에서는 當初부터 「條理의 原則」을 大前提로 한 公正去來法을 制定하였으나, 1970年代, 1980年代에는 이것을 改正・強化・整備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리하여 美國과 유럽諸國의 오늘날의 公正去來法은 法制에 있어서나 運用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갖게 되었다.

6.25 動亂으로 모든 産業施設이 破壞되고 生産活動이 마비되었던 韓國經濟가 經濟成長을 위하여 본격적인 工業化政策을 추진한 것은 第1次 5個年經濟開發計劃이 시작된 1962년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生産에 필요한 資本과 技術이 부족하고, 製品에 대한 國內市場이 협소한 韓國經濟는 外國으로부터 資本과 技術을 導入하고 輸出을 促進하는 政策을 실시함으로써 급속한 經濟成長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政府主導型 經濟開發政策은 少數의 企業에게 資金의 配分과 稅制上的 偏重의 支援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大企業과 企業集團이 形成되어 經濟力이 이들에게 集中되는 獨寡占經濟를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로 産業間의 資源配分의 非效率과 所得分配의 歪曲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政府는 1960년대 중반부터 獨占禁止를 위한 公正去來政策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數次에 걸쳐서 公正去來法案을 國會에 提出하였고, 1975년에는 마침내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을 制定하여 부분적인 公正去來政策의 導入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公正去來政策은 1980년에 制定된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實施되게 되었으며, 1986년에는 그동안 논란의 대상으로 되어 온 이른바 企業集團의 規制를 爲 主로 하는 커다란 法改正이 이루어졌다.

本稿는 다음과 같이 5개 部分으로 構成된다. II의 「公正去來政策의 導入」 部分에서는 1975년에 制定된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의 主要內容과 問題點을 살펴 보고, III의 「公正去來政策의 確立」 部分에서는 1980년에 制定된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의 主要한 實體規定 및 專擔機構와 手續節次를 考察한 다음, IV의 「公正去來法の 改正」 部分에서는 1986년에 同法이 企業集團의 規制를 중심으로 하여 어떻게 改正되었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V에서는 日本의 獨占禁止政策의 展開過程을 살펴보고, 끝으로 結論部分 VI에서는 以上の 논의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公正去來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向에 관하여 略述할 것이다.

II. 公正去來政策의 導入—「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의 制定

우리나라의 公正去來政策導入을 위한 최초의 노력은 經濟企劃院이 1964년 9월에 立案한 「公正去來法草案」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草案은 韓國經濟人協會의 반대 등으로 國務會議에 上程도 되지 못하였다. 그 뒤로 政府는 1966년부터 「公正去來法案」 또는 「獨占規制

法案]의 이름으로 4次에 걸쳐서 公正去來法案을 國會에 제출하였으나, 번번히 國會에 上程되기 전에 自動廢棄되었다. 이와 같이 公正去來政策이 수차에 걸치는 政府의 試圖에도 불구하고 立法化되지 못한 것은 當時의 우리나라가 經濟成長의 初期段階에 있었으므로 政府主導의 經濟計劃이 추진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企業에 대한 支援과 育成이 필요하고 民間經濟에 競爭原理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認識이 政府나 學界 또는 企業과 國民에게 공통적으로 內在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1973년에 1次石油波動을 겪은 韓國經濟는 生産減少, 物價上昇, 國際收支惡化라는 60년대 이후로 가장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였고, 이에 따라서 「獨占의 弊害」를 막기 위한 논의가 대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政府는 1973년부터 施行중인 「物價安定에 관한 法律」과 1975년 2월에 작성한 「公正去來立法法要綱」을 절충하여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을 立案하였다. 同法案은 1975년 12月 18日에 大統領緊急措置下의 國會에서 통과되고 同年 12月 31日에 公布되었다.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은 “物價의 安定을 期하고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秩序를 確立”(1條)하기 위하여 物價에 대한 直接規制政策과 競爭秩序를 유지하기 위한 公正去來政策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政策은 前者는 市場構造와 市場行動보다도 市場成果를, 後者는 市場成果보다도 市場構造와 市場行動을 規制한다는 의미에서, 產業組織論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相反되는 性격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物價에 대한 直接規制를 위해서는 企業間的 價格競爭을 억제해야 하고, 企業間的 競爭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價格을 自律化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同法の 2元性을 同法の 規制內容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同法에 規定된 措置 중에서, (i) 國民生活에 緊要한 物品의 最高價格의 指定(2條), (ii) 公共料金 등의 決定(4條), (iii) 獨寡占價格의 申告와 指定(5條) 및 (iv) 緊急需給調整措置(6條) 등은 價格에 대한 直接規制에 속하고, (i) 價格表示(3條), (ii)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7條) 및 (iii) 競爭制限行爲의 規制(8條) 등은 公正去來政策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同法을 施行한 결과를 보더라도, 主要한 商品의 價格統制나 獨寡占品目的 價格規制와 같은 物價統制가 주로 이루어졌고, 企業間的 競爭을 促進하는 競爭制限行爲나 不公正去來行爲의 規制에는 消極的이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매년 價格의 申告 및 指定對象으로 된 獨寡占品目的 數는 약 150個品目に 해당된 반면, 競爭制限行爲에 관하여는 5件을 調査하였으나 違法行爲로 認定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시멘트 카르텔을 不況克服이나 合理化를 위한 카르텔로 해석하여 承認하였으며, 不公正去來行爲로 是正된 事件도 同法施行期間인 1976년

부터 79년 사이에 모두 100件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 85件은 2次石油波動期에 쌀과 煉炭과 같은 小規模商人들의 買占賣惜行爲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部分的이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公正去來政策은 1975년의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처음으로 導入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公正去來政策의 確立—「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의 制定

1978년의 2次石油波動을 겪으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經濟成長의 둔화, 失業의 증가, 급격한 物價上昇 및 國際收支의 惡化는 또다시 韓國經濟로 하여금 그 동안의 經濟運用方式에 대한 政策轉換을 필요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政府는 大企業을 위주로 하는 工業化政策으로 經濟成長을 이룩하였으나, 그 결과로 少數의 大規模企業과 企業集團에 經濟力이 集中되어 資源의 效率的 配分이 歪曲되고, 政府의 價格에 대한 直接規制政策은 오히려 物價安定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政府는 經濟運用의 基本方向을 政府主導에서 民間主導로 轉換하고, 競爭原理을 導入하여 市場機能을 활성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韓國經濟의 成長과 安定을 위한 基本的 課題임을 認識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政府에서는 1979년초부터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을 改正하여 公正去來政策을 본격적으로 制度化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를테면 1979년에 經濟企劃院 公正去來政策室이 「公正去來制度의 改善方向」을 마련하고, 經濟科學審議會議長 丁炳休·趙炳澤·李承勳으로 하여금 「韓國產業의 獨寡占構造와 그 規制方案에 관한 研究」를 委囑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政府의 움직임은 마침내 “獨寡占의 弊端은 適切히 規制調整한다”는 第5共和國 憲法(120條 3項)의 獨占禁止規定을 근거로 하여,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이 1980년 12월에 臨時立法會議을 통과하고 동년 12월 31일에 공포되었다. 이 法律의 制定과 함께 종전의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은 改正되어 公正去來에 관련되는 諸條文은 삭제되었다.

同法의 제정은 그동안 채택한 政府主導的 經濟運用方式을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한 民間主導的 運用方式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經濟秩序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음에는 同法이 이러한 經濟秩序의 형성을 위하여 어떠한 政策手段을 規定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자.

1. 實體規定

同法은 “事業者의 市場支配의 地位의 濫用과 過度한 經濟力의 集中을 防止하고 不當한 共同行爲 및 不公正去來行爲를 規制하여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을 促進함으로써 創意的인 企業活動을 助長하고 消費者를 保護함과 아울러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發展을 圖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條).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의 促進을 直接的 目的으로 하고, (i) 創意的인 企業活動의 助長, (ii) 消費者의 保護 및 (iii) 國民經濟의 均衡의 發展을 窮極的 目的으로 하여, (i) 事業者의 市場支配의 地位의 濫用, (ii) 過度한 經濟力集中, (iii) 不當한 共同行爲 및 (iv) 不公正去來行爲를 禁止하고 있는 同法은 本格的인 獨占禁止立法의 性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1) 市場支配의 地位의 濫用禁止

獨寡占企業을 規制하는 데 있어서는 企業分割 등의 方法으로 獨占의 市場構造를 競爭의 市場構造로 바꾸는 構造規制政策과 그러한 市場構造를 그대로 두고 獨寡占企業의 市場支配力의 濫用行爲를 規制하는 行動規制政策이 있다. 美國과 日本 등은 構造規制가 가능한 獨占禁止法을 가지고 있고, 西獨과 英國 등은 市場構造보다도 市場支配力의 濫用行爲를 規制하는 獨占禁止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獨寡占企業에 대한 構造規制보다도 그러한 企業을 市場支配의 事業者로 指定하고, 그들이 市場支配의 地位를 濫用하는 行爲를 規制하는 行動規制를 하고 있다.

1) 市場支配의 事業者의 指定

우리나라에서 規制對象이 되는 市場支配의 事業者는 同種 또는 類似한 商品이나 用役의 供給에 있어서, (i) 競爭事業者가 存在하지 아니하거나 實質的인 競爭이 存在하지 아니할 경우, (ii) 競爭事業者와의 관계에 있어서 壓倒的인 地位를 占하는 경우, (iii) 2個 以上の 事業者 중 少數의 事業者가 그 전체로서 壓倒的인 地位를 占하는 경우로서 大統領이 定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事業者를 말한다(2條 4項). 그러므로 經濟學的 用語를 쓴다면 單純獨占(simple monopoly)企業, 優越的 企業(dominant firm) 및 堅固한 寡占狀態(tight oligopoly)에 있는 寡占企業들이 市場支配의 事業者의 指定對象으로 된다.

그리고 同法 施行令에서 定해진 基準에 의하면, 國內總供給額(이것은 總出荷額에서 輸出額을 빼고 輸入額을 加算한 다음 間接稅를 控除한 金額이다)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同種 또는 類似한 事業分野에서 그 市場占有率이 1社 50% 이상 또는 3社 이하의 累積市場占有率이 70% 이상으로 되는 事業者(단 이들 중에서 市場占有率이 5% 미만인 事業者는 제외된다)가 市場支配의 事業者로 指定되고(令 3條 ①), 經濟企劃院長官은 每年 이러한 基準

에 해당하는 事業者를 市場支配의 事業者로 指定・告示하고 있다.

2) 市場支配의 事業者의 濫用行爲의 規制

일반적으로 市場支配力을 가지는 獨寡占企業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市場支配力을 濫用하는 여러가지 行爲를 할 수 있으나, 同法에 의하면 指定된 市場支配의 事業者가 단독으로 (i) 商品의 價格이나 用役의 代價를 不當하게 決定, 維持 또는 變更하는 行爲(價格濫用行爲), (ii) 商品의 販賣 또는 用役의 제공을 不當하게 調節하는 行爲(數量調節行爲), (iii) 다른 事業者의 事業活動을 不當하게 妨害하는 行爲(他事業者의 事業活動 妨害行爲), (iv) 새로운 競爭事業者의 進入을 妨害하거나 一定한 去來分野에서 競爭事業者를 排除하기 위하여 施設을 新設 또는 增設하는 行爲(競爭制限의 新增設行爲), (v) 其他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거나 消費者의 利益을 현저하게 沮害하는 行爲(3條)와 價格濫用行爲 規制對象이 아닌 複數의 市場支配의 事業者가 서로 同調的으로 價格을 引上하는 行爲(價格의 同調的 引上行爲) (4條)를 市場支配力 濫用行爲로 規定하고, 經濟企劃院長官은 이러한 濫用行爲를 하는 市場支配의 事業者에 대하여는 價格의 引下, 當該行爲의 中止, 其他 그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5條).

同法の 規定에 의하면 指定된 市場支配의 事業者 중에서 市場占有率이 50% 이상인 事業者는 價格濫用行爲의 禁止對象으로 되고, 同調的 價格引上의 禁止對象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이 市場支配의 事業者를 價格濫用行爲禁止 市場支配의 事業者와 一般濫用行爲禁止 市場支配의 事業者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個別的 價格濫用行爲나 同調的 價格引上行爲는 市場支配力을 갖는 企業이라면 어떠한 企業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企業結合의 制限

이상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形成된 個別企業의 獨寡占狀態는 認定하되 그 濫用行爲를 禁止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個別企業이 經濟力을 集中하는 獨占行爲(monopolization), 즉 새로운 獨占狀態가 形成되는 것은 禁止된다. 이것이 企業結合(combination)의 制限이다. 同法の 規定에 의하면, 이러한 企業結合은 他會社의 株式의 取得, 任員의 兼任, 合併, 營業의 讓受 또는 新會社의 設立을 가리킨다(7條).

同法 施行令에 의하면 納入資本金이 10억원 이상이거나 總資產이 50억원 이상인 會社는 企業結合의 規制對象이 된다(令 12條). 이러한 會社는 (i) 그 會社가 자기의 系列會社를 포함하여 다른 會社의 發行株式 總數 또는 出資總額의 10% 이상을 取得 또는 所有하거나, (ii) 그 會社의 任員 또는 從業員이 競爭關係에 있는 다른 會社의 任員을 兼任하거나, (iii)

그 會社가 다른 會社와 合併하거나, (iv) 다른 會社의 營業을 讓受하거나, 또는 (v) 새로운 會社를 設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經濟企劃院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러한 企業結合의 申告는 會社 이외의 者가 相互競爭關係에 있는 둘 이상의 會社의 株式을 각각 10% 이상 取得 또는 所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要求된다(8條).

이러한 企業結合은 그것이 (i) 一定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적으로 制限하거나(7條 1項), (ii) 強要 기타 不公正한 方法으로 이루어지거나(7條 4項), 또는 (iii) 脫法行爲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9條), 經濟企劃院長官은 당해 事業者 또는 違反行爲者에 대하여 당해 行爲의 禁止, 株式의 전부 또는 일부의 處分, 任員의 辭任, 營業의 일부 讓渡,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10條).

그러나 一定한 去來分野에 있어서 競爭을 實質적으로 制限하는 企業結合이라도, 만일 당해 事業者가 그러한 企業結合이 産業合理化나 國際競爭力의 強化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立證하고 經濟企劃院長官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適用除外로 된다(7條 但書 및 3項). 특히 産業合理化를 위한 企業結合은, (i) 産業構造 및 組織의 改編이 産業活動의 能率增大 및 經營合理化를 위하여 불가피하거나, (ii) 통상적인 方法으로 施設投資 및 運營에 필요한 거액의 資金을 調達하기가 곤란하거나, 또는 (iii) 公共의 利益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令 14條).

企業結合의 制限은 經濟力의 集中을 未然에 防止하는 獨占禁止政策의 중요한 수단인 하나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申告된 企業結合의 合法性 與否가 公正去來室에 의하여 行政적으로 처리되고 公正去來委員會의 審議를 거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企業結合이 차지하는 公正去來政策上的 重要성과 同法の 立法趣旨에 비추어 보더라도 申告된 企業結合이 一定한 去來分野에서 實質적으로 競爭을 制限하는지의 與否는 公正去來委員會의 審議, 議決을 거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共同行爲의 禁止

共同行爲(collusion)는 원래 個別事業者間의 水平的 카르텔行爲를 가리키지만 事業者團體를 통한 共同行爲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事業者間의 共同行爲와 함께 事業者團體의 禁止行爲도 여기서 다루기로 한다.

1) 事業者間의 共同行爲

同法에 의하면 事業者가 契約, 協定, 決議 기타 어떠한 方法에 의하여 다른 事業者와 共同으로, (i) 價格을 決定, 維持 또는 變更하는 價格카르텔, (ii) 商品의 販賣條件 또는 用役의 提供條件이나 그 代金の 支給條件을 定하는 販賣條件 카르텔, (iii) 商品의 生産,

出庫 또는 販賣의 制限이나 用役의 提供을 制限하는 數量카르텔, (iv) 去來地域 또는 去來 相對方을 制限하는 市場分割 카르텔, (v) 生産 또는 用役의 提供을 위한 設備의 新設 또는 增設이나 裝備의 導入을 制限하는 投資카르텔, (vi) 商品의 生産 또는 販賣에 있어서 그 商品의 種類 또는 規格을 制限하는 規格카르텔 등 독립된 事業者間의 여러가지 水平的 카르텔行爲를 共同行爲로 規定하고 있다(11條).

獨占禁止政策을 채택하고 있는 各國은 共同行爲를 規制하는 데 있어서 當然違法(per se illegal)의 原則을 적용하여 모든 共同行爲를 理由를 불문하고 違法으로 하거나, 條理의 原則을 적용하여 不當한 共同行爲만을 違法으로 하거나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公共의 利益에 反하여 一定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적으로 制限하는 不當한 共同行爲를 規制하는 條理의 原則을 적용하고 있다.

마꾸어 말하면, 어떤 事業者가 다른 事業者와 함께 共同行爲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內容을 經濟企劃限長官에게 登錄해야 하고(11條), 經濟企劃限長官은 그 登錄申請事項이 公共의 利益에 反하여 一定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적으로 制限하는 不當한 共同行爲인 경우에는 登錄을 거부하거나 申請事項에 변경을 가하여 登錄하게 할 수 있다(12條). 그리고 登錄된 共同行爲에 대하여는 經濟企劃限長官은 이것을 登錄簿에 記載하고 公開하여야 한다(13條).

그러나 特定産業 전체가 不況에 빠져있거나 事業者間의 共同努力에 의한 産業合理化가 필요한 경우에는 不當한 共同行爲일지라도 不況克服이나 産業合理化를 위하여 認定된다(12條 但書).

不況을 克服하기 위한 事業者間의 共同行爲, 즉 不況카르텔은, (i) 需要가 지속적으로 減少하고, (ii) 去來價格이 3개월 이상 平均生産費를 밑돌고, (iii) 해당 事業分野의 상당수의 企業이 事業活動을 계속하기가 어렵게 될 憂慮가 있고, (iv) 企業의 合理化로는 以上の 事項을 克服할 수가 없는 경우에 인정되며, 그 實施期間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令 19條). 그리고 産業合理化를 위한 事業者間의 共同行爲, 즉 産業合理化카르텔은 技術向上, 品質改善, 原價引下 등을 목적으로 하되, (i) 共同行爲 이외의 方法으로는 合理化를 달성하기가 곤란하고, (ii) 共同行爲에 의한 合理化의 效果가 明白하고, (iii) 共同行爲를 禁止시키는 效果보다도 合理化카르텔의 效果가 더 큰 경우에 인정된다(令 20條).

2) 事業者團體의 規制

事業者團體(trade association)란 그 名稱이나 形態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事業者가 자기의 共同的 利益을 증진할 목적으로 組織한 結合體 또는 聯合體이다(法 2條 2項). 그런데 이러한 事業者團體는 構成事業者間의 不當한 共同行爲의 溫床으로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自由로운 事業活動을 制限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므로 모든 事業者團體는 法律에 근거를 가지고 設立되거나 임의로 設立되는 경우를 막론하고 그 設立에 관한 事項을 經濟企劃院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法 17條). 그리고 이러한 事業者團體의 共同行爲는 事業者間의 共同行爲와 마찬가지로 經濟企劃院長官에게 登錄해야 하며, 만일 經濟企劃院長官이 그 登錄申請事項이 一定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는 不當한 共同行爲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拒否하거나 申請事項의 변경을 命할 수 있다(法 18條 2項).

뿐만 아니라 事業者團體는 (i) 一定한 去來分野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事業者의 數를 制限하는 行爲, (ii) 構成事業者의 事業內容이나 事業活動을 不當하게 制限하는 行爲 또는 (iii) 構成事業者에게 不公正去來行爲 또는 再販賣價格 維持行爲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法 18條 1項). 事業者團體가 不當한 共同行爲를 하거나 이러한 그 밖의 行爲를 하는 경우에는, 經濟企劃院長官은 그 事業者團體에 대하여 이러한 行爲를 是正하는 措置를 命할 수 있다(法 19條).

(4) 不公正去來行爲의 規制

事業者들의 去來形態는 매우 복잡하므로 그들의 不公正한 去來行爲를 規制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去來行爲가 不公正한 去來行爲에 해당하는가를 구체적으로 擧示할 필요가 있다. 同法에 의하면 不公正去來行爲란, (i) 不當하게 去來相對方을 差別的으로 취급하는 行爲(差別的 取扱), (ii) 不當하게 競爭事業者를 排除하기 위하여 去來하는 行爲(排他的 去來), (iii) 不當하게 競爭事業者의 顧客을 자기와 去來하도록 誘引하거나 強制하는 行爲(顧客誘引, 去來強制), (iv) 자기의 去來上的 地位를 不當하게 利用하여 相對方과 去來하는 行爲(優越的 地位의 利用), (v) 去來相對方の 事業活動을 不當하게 拘束하는 條件으로 去來하는 行爲(拘束條件附去來), (vi) 商品 또는 用役に 관하여 虛偽 또는 誇張된 廣告를 하거나 商品의 質 또는 量을 속이는 行爲(虛偽誇張廣告 또는 欺瞞行爲) 등에 대하여 經濟企劃院長官이 公正한 去來를 沮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하여 指定, 告示한 行爲를 말한다(法 15條).

이 規定에 의하여 經濟企劃院長官은 모든 事業分野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不公正去來行爲와 특정한 事業分野 또는 特定한 行爲에만 적용되는 不公正去來行爲를 指定할 수가 있는데(令 12條), 前者를 一般指定 不公正去來行爲, 後者를 特殊指定 不公正去來行爲라고 부르기도 한다.

「不公正去來行爲 指定告示」는 모든 事業分野에 적용되는 一般指定 不公正去來行爲이고, 「景品類提供에 관한 不公正去來行爲 指定告示」와 「下都給去來上的 不公正去來行爲 指定告

示」(이 告示는 「下都給去來 公正化에 관한 法律」의 制定으로 폐기되었음)는 각각 景品類 提供과 下都給去來를 하는 特定行爲에만 적용되는 特殊指定 不公正去來行爲이며, 「流通業 界의 割引特別販賣行爲에 대한 不公正去來行爲 指定告示」와 「百貨店業에 있어서의 特殊不 公正去來行爲 指定告示」는 流通業과 百貨店業이라는 特定事業分野에만 적용되는 特殊指定 不公正去來行爲이다.

(5) 再販賣價格 維持行爲의 禁止

이상에서 列擧한 여러가지 去來行爲는 不公正去來行爲로 보는 것이 당연하지만, 再販賣 價格 維持行爲는 다른 事業者의 活動을 구속하는 不公正去來行爲로 볼 수도 있고, 製造業 者와 販賣業者間의 垂直的 共同行爲(vertical collusion)로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公正 去來法은 이것을 明示하고 있지는 않으나, 政策當局은 이것을 不公正去來行爲로 보고 있다.

同法에 의하면 再販賣價格 維持行爲는 原則적으로 禁止되고(法 20條 1項), 이에 違反하 는 行爲가 있을 때에는 經濟企劃院長官은 是正措置를 命할 수 있다(法 22條). 그러나 著作 物(令 24條)과 事業者가 經濟企劃院長官으로부터 再販賣價格 維持對象品目으로 指定을 받 은 商品은 同法의 適用對象이 되지 않는다(法 20條 2項).

事業者가 再販賣價格 維持行爲를 하기 위하여 그 對象品目的 指定을 받으려면 經濟企劃 院長官에게 이를 申請해야 하고, 經濟企劃院長官은 (i) 當該 商品의 品質이 同一한 것을 용이하게 識別할 수 있고, (ii) 一般消費者에 의하여 日常 使用되고, (iii) 自由로운 競爭이 행하여지고 있는 商品에 한하여 이를 指定·告示한다(法 20條, 3, 4項).

그리고 再販賣價格 維持行爲 對象品目으로 指定된 商品에 대하여 再販賣價格 維持契約을 締結한 事業者는 契約日로부터 30日 이내에 그 契約에 관한 事項을 經濟企劃院長官에게 申 告해야 하고, 만일 그 契約事項이 消費者의 利益을 현저히 沮害할 우려가 있거나, 公共의 利益에 反하는 경우에는 經濟企劃院長官은 그 契約事項을 변경 또는 수정하게 할 수 있다 (法 21條).

(6) 國際契約의 制限

또한 同法에 의하면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가 外國의 事業者와 締結하는 借款契約, 合 作投資契約, 技術導入契約, 1년을 초과하는 輸入代理店契約 또는 長期輸入契約 등의 國際 契約이 不當한 共同行爲나 不公正去來行爲에 해당하는 事項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國際契約은 禁止된다(法 23條).

이러한 國際契約을 締結한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契約 締結日로부터 30日 이내에 經 濟企劃院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法 24條 1項). 그러나 外資導入法에 의한 借款契約, 合

作投資契約 및 技術導入契約은 그 認可申請을 同法에 의한 申告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法 24條 2項), 실제로 申告를 해야 하는 國際契約은 輸入代理店契約과 長期輸入契約에 한정된다.

經濟企劃院長官은 不當한 共同行爲 또는 不公正去來行爲에 해당하거나 이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國際契約에 대하여는, 당해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게 契約의 取消, 契約內容의 修正, 變更,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法 25條). 다만 主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하는 外資導入法上的 國際契約에 대하여는 經濟企劃院長官의 主務部長官에 대한 意見通報로 是正措置에 대신한다(令 27條 2項). 그리고 國際契約上 規制되는 不當한 共同行爲와 不公正去來行爲는 「國際契約上的 不當한 共同行爲 및 不公正去來行爲의 範圍 및 基準」에 관한 告示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規定되고 있다.

2. 專擔機構와 手續節次

(1) 公正去來委員會와 公正去來室

公正去來委員會는 經濟企劃院長官이 同法에 規定된 중요한 事項과 同法에 違反되는 事項에 대한 決定, 處分을 하기에 앞서서 이를 審議, 議決하기 위하여 設置된 專擔機構이다(法 26條).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公正去來委員會는 公正去來法을 施行하는 獨立的 行政委員會라기 보다는 經濟企劃院에 設置된 法定必要常設議決機關이라고 볼 수 있다.

同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하는 5人的 公正去來委員으로 構成되고, 그 중 3人은 常任委員이고, 2人은 非常任委員이며(法 27條), 그 任期는 3년이다(法 29條). 그리고 違反事件의 調査 및 事前審査등을 專擔하기 위하여 經濟企劃院에 2人的 審査官을 두고 있다(法 38條).

公正去來委員會가 審議, 議決하는 事項은 다음과 같다(法 31條). (i)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令, 適用除外 法律의 指定을 위한 法律 및 競爭制限을 內容으로 하는 法令 등의 制定 또는 改正에 관한 事項(法 47條 2項), (ii) 市場支配의 事業者의 指定(法 2條 5項), 不公正去來行爲의 指定(法 15條), 再販賣價格 維持行爲 對象品目的 指定(法 20條 2項), 國際契約의 不當한 共同行爲 및 不公正去來行爲의 範圍 및 基準의 決定 등에 관한 事項(法 23條 2項), (iii) 市場支配의 地位의 濫用과 價格의 同調의 引上行爲, 不當한 또는 不公正한 企業結合, 不當한 共同行爲, 不公正去來行爲, 事業者團體의 不當한 行爲, 不當한 再販賣價格 維持行爲 및 不當한 國際契約 등에 대한 是定措置에 관한 事項(法 10條, 14條, 16條, 19條, 21條 2項 및 22條, 25條), (iv) 價格濫用行爲 規制對象 市場支配의 事業者의 價格濫用行爲에 대한 課徵金の 納付命令에 관한 事項(法 6條 1項), (v) 會社의 合併 또는 設立의 無效의 訴의 提起에 관한 事項(法 10條 2項), (vi) 異議申請에 관한 事項(法 42條),

(vii) 違反事件의 告發에 관한 事項(法 60條), (viii) 기타 經濟企劃院長官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委員會에 附議한 事項(法 31條 1項 8號).

公正去來室은 同法에 規定되지 않고 經濟企劃院 職制에 規定된 行政機構이며, 同法 施行에 필요한 諸般法令의 制定 등을 위한 立案 및 同法 違反事件에 대한 調査를 所管業務로 한다. 그리고 公正去來室에는 公正去來室長 아래에 審議官 1人과 審査官 2人을 두고, 지금은 公正去來總括課, 公正去來制度課, 企業 1 課, 企業 2 課, 團體課, 下都給課, 去來 1 課 및 去來 2 課가 있다(經濟企劃院職制 14條).

(2) 手續節次

公正去來法 違反事件은 審査官이 一般人的 申告나 審査官의 職權으로 認知된다(法 39條). 違反事件의 調査를 專擔하는 審査官은 認知된 事件에 대한 구체적인 調査를 開始하고, 利害關係人이나 參考人的 意見을 聽取할 수 있으며, 當該 事業者에게 필요한 資料와 物件의 提出을 命令하고, 現場調査를 할 수 있다(法 40條).

經濟企劃院長官은 이러한 調査의 結果로, (i) 만일 그 違反事件이 輕微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이를 不問處分하며, (ii) 被審人과의 合意에 의한 是正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公正去來委員會의 審決에 附議하기에 앞서서 당해 違反行爲의 中止, 기타 필요한 是正措置를 勸告하거나(그러나 經濟企劃院長官이 是正勸告를 하는 경우에 그 勸告內容이 중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미리 公正去來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法 41條), 또는 (iii) 公正去來委員會의 正式審決(formal decision)에 附議하여야 한다.

公正去來委員會는 附議된 違反事件을 準司法的 節次에 따라서 審議하고, 同事件을 不問에 불일 것인가, 是正勸告 또는 是正命令 등의 是正措置를 취할 것인가, 또는 司直當局에 告發할 것인가(法 60條)를 審決한다.

公正去來委員會의 審決에 따른 經濟企劃院長官의 處分에 대하여는 被審人은 異議申請(法 42條)과 不眠의 訴(法 43條)를 提起할 수 있다. 그리고 經濟企劃院長官이 告發한 事件은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각각 이 法에 規定된 罰金 또는 體刑이 부과되거나, 이 兩罰이 併課될 수 있고(法 55條, 56條, 57條, 58條 및 59條), 是正措置가 確定된 事件에 대하여는 被害當事者가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法 46條).

IV. 公正去來政策의 強化—「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의 改正

1980년의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은 1986년 12월 31일에 크게 改正되고, 그

것에 따라서 同法 施行令도 1987년 4월 1일에 改正되었다. 이 改正은 그 동안의 施行過程에서 나타난 未備點을 補完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輿論의 對象이 되었던 企業集團 내지 大企業으로의 經濟力의 集中을 抑制하는 措置를 講究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어떠한 중요한 변경이 있었는가를 차례로 略述하기로 한다.

1. 市場支配의 地位濫用禁止의 強化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1980年の 舊法에서는, 특히 價格濫用을 禁止하는 對象으로 되는 市場支配의 事業者를 一般濫用 市場支配의 事業者와 구별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서 同法 施行令은 價格濫用 禁止對象 市場支配의 事業者를 市場占有率이 50% 이상인 市場支配의 事業者로 한정하였으나, 改正法에서는 指定된 모든 市場支配의 事業者가 價格을 濫用하는 行爲를 禁止함으로써 價格濫用行爲 禁止對象 市場支配의 事業者와 一般濫用行爲 禁止對象 市場支配의 事業者의 구별을 없애고 있다(新法 3條 i). 또한 市場支配의 事業者의 濫用行爲의 類型도 확대하여, 價格濫用行爲, 數量調節行爲, 他事業者의 事業活動 妨害行爲, 競爭制限의 新增設行爲, 競爭을 實質적으로 制限하거나 消費者의 利益을 현저하게 沮害하는 行爲 뿐만 아니라, 市場支配의 事業者가 새로운 競爭事業者의 進入을 不當하게 妨害하는 行爲를 새로이 禁止하고 있다(新法 3條, iii).

그리고 舊法에 의하면, 市場占有率이 50% 이상인 價格濫用 禁止對象 市場支配의 事業者는 不當한 價格의 同調의 引上의 禁止對象에서 제외되었으나(舊法 4條), 改正法에서는 本條가 삭제되고, 新法 施行令은 不當한 價格의 同調의 引上行爲도 價格濫用行爲로 規定함으로써 모든 市場支配의 事業者가 不當한 價格의 同調의 引上行爲를 하는 것을 禁止하고 있다. 그러므로 新法은 舊法보다도 市場支配의 事業者가 자기의 市場支配의 地位를 濫用하는 行爲를 보다 더 強力하게 規制하고 있는 것이다.

2. 企業結合類型의 修正

舊法에 의하면 株式取得, 任員兼任, 營業讓受, 新會社의 設立 등이 制限되는 企業結合의 類型이다. 그런데 新法은 新會社의 設立을 새로운 會社設立에의 參與로 修正하고 있는데(新法 7條 v), 이것은 企業結合의 規制를 強化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新會社의 設立」이든 「새로운 會社設立에의 參與」이든 그러한 行爲가 企業結合行爲로 되는가는 理論적으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3. 株式所有 申告基準의 變更

改正法은 會社 또는 會社 이외의 者의 企業結合 申告基準은 緩和하였으나, 大規模 企業集團(그 定義는 pp. 15-16 참조)에 속하는 系列企業의 企業結合의 申告基準은 強化하고

있다.

중견에는 納入資本金이 10억원 이상이거나 總資産이 50억원 이상인 會社가 다른 會社의 株式이나 出資總額의 10% 이상을 所有하거나, 會社의 者가 競爭關係에 있는 그 이상의 會社의 株式을 각각 10% 이상 所有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관하여 經濟企劃院長官에게 申告하도록 되었으나(舊法 7條 1項, 同施行令 12條 1項, 舊法 8條 1項 1,2號), 新法에서는 이 比率를 각각 20% 이상으로 인상하여 株式所有 申告義務를 緩和하고 있다(新法 8條 1項, 1,2號).

그러나 會社가 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系列會社라면, 그 納入資本金이 10억원 이하이거나 總資産이 50억원 이하이더라도 그 企業集團에 속하는 系列會社나 特殊關係人과 共同으로 다른 會社의 株式을 20% 이상 所有하는 경우 이를 經濟企劃院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新法 8條 2項).

4. 經濟力集中의 抑制

改正된 新法은 大企業, 특히 企業集團에 經濟力이 集中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持株會社 設立의 禁止, 大規模 企業集團의 指定과 通知, 大規模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의 株式所有現況 申告, 大規模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間의 相互出資의 禁止, 大規模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의 出資總額의 制限 및 大規模 企業集團에 속하는 金融, 保險會社의 議決權 制限의 規定을 두고 있다.

(1) 持株會社 設立의 禁止

新法에 의하면 持株會社는 株式의 所有를 통하여 國內會社의 事業內容을 지배하는 것을 주요한 사업으로 하는 會社이고, 누구든지 이러한 持株會社를 設立하거나 이미 設立된 會社가 이러한 持株會社로 轉換하는 것이 금지된다(新法 7條 2). 그리고 同法施行令은 持株會社를 다른 會社의 事業內容을 지배할 목적으로 所有하는 株式의 帳簿價額의 合計가 그 會社의 資産總額의 50% 이상으로 되는 會社로 規定하고 있다(新法 施行令 14條).

그러나 同法은 法律에 의하여 設立되는 持株會社나 外資導入法에 의한 外國人投資事業을 위하여 設立되고 經濟企劃院長官의 承認을 얻은 持株會社의 경우에는 適用되지 않는다(新法 7條 2;2項).

그리고 經過措置로서 이 法이 施行될 當時 持株會社로 되어 있는 會社에 대하여는 1年間의 猶豫期間을 두고 있다(新法 附則 2條).

(2) 大規模 企業集團의 指定과 通知

同法에서 말하는 企業集團은 同一人이 會社인 경우에는 그 同一人과 그 同一人이 사실

상 그 事業內容을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會社의 集團이고, 同一人이 會社가 아닌 경우에는 그 同一人이 사실상 그 事業內容을 지배하는 두개 이상의 會社의 集團을 가리킨다(新法 2條 2項). 여기서 말하는 “同一人이 사실상 그 事業內容을 지배하는 會社”는 同法 施行令의 規定에 의하면, 同一人이 단독으로 또는 特殊한 關係(이에 관하여는 同法 施行令 2條 2 참조)에 있는 者와 공동으로, 當該會社의 發行株式 總額의 30% 이상을 所有하고 있는 會社이거나 기타 任員의 任免 등으로 當該會社의 經營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會社이다(新法 施行令 2條 2).

그리고 大規模 企業集團은 위에서 정의된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들의 資產總額이 大規模 企業集團 指定 直前年度에 4천억원 이상인 企業集團이다(新法 施行令 15條). 同法에 의하면, 經濟企劃院長官은 매년 한번씩 이러한 大規模 企業集團을 指定하고 그러한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에게 이를 通知하여야 한다(新法 8條 3).

(3) 大規模 企業集團의 株式所有 現況 申告

大規模 企業集團으로 指定된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는 그 會社의 다른 國內會社에 대한 株式所有 現況 및 그 會社의 株主現況과 財務狀況을 經濟企劃院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新法 8條 2). 그리고 新法 施行令에 의하면, 이러한 會社는 그러한 申告書를 所有株式 明細書, 相互出資 現況表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新法 施行令 16條 3).

(4) 大規模 企業集團의 相互出資 禁止

우리나라의 企業集團에 속하는 系列企業間的 과다한 相互出資는 無分別한 多角化, 融資金의 偏重, 僞裝株式公開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新法에 規定된 大規模 企業集團의 相互出資의 禁止는 企業集團의 經濟力의 集中과 擴大, 實質的 生産能力과 無關한 架空의 自己資本의 增大, 이러한 架空의 自己資本의 規模에 따르는 與信의 偏重, 大衆株主의 弱化現象 등을 막기 위하여 취해진 대담한 措置라고 할 수 있다.

同法에 의하면 大規模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는, 金融業 및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의 株式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系列會社의 株式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直接的 相互出資를 하여서는 안된다(新法 7條 3의 1項). 다만 會社를 合併하거나 營業全部를 讓受하는 경우 또는 擔保權의 實行 또는 代物辨濟의 實行 등의 경우에는, 出資 會社는 株式을 取得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이를 處分하여야 한다(新法 7條 3).

그리고 이 法이 施行되기 3년이 되기 前에 大規模 企業集團으로 指定된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의 相互出資는 이 期間에 限하여 相互出資가 許容된다(新法 附則 3條).

(5) 大規模 企業集團의 出資總額의 制限

앞에서 고찰한 大規模 企業集團에 속하는 系列會社間的 相互出資의 禁止는 架空의인 資本形成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大規模 企業集團에 속하는 系列會社가 保有하는 株式總額의 制限은 그러한 會社들이 다른 會社의 株式을 과다하게 保有함으로써 企業集團이 各事業分野에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同法에 의하면, 大規模 企業集團에 속하는 系列會社가 取得 또는 所有하는 다른 國內會社의 株式의 帳簿價格의 合計額(出資總額)은 그 會社의 純資產額의 40%(出資限度額)를 초과할 수 없다(新法 7條 4).

그러나 그러한 會社가 「工業發展法」 또는 「租稅減免規制法」에 의거하여 他會社의 株式을 取得 또는 所有하는 경우에는 4년 동안 그것으로 인한 出資限度額의 초과가 인정되고, 新株의 取得이나 擔保權의 行使 또는 代物辨濟의 受領으로 株式을 取得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그것으로 인한 出資限度額의 초과가 인정된다(新法 7條 4의 1項 1, 2 및 3號).

그리고 新法 施行日로부터 5년 이내에 大規模 企業集團으로 指定되는 企業集團의 系列會社의 指定當時의 出資總額은 同法 施行日로부터 5년 사이에는 出資限度額으로 인정된다(新法 附則 4條).

(6) 大規模 企業集團에 속하는 金融, 保險會社의 議決權 制限

大規模 企業集團에 속하는 系列會社로서 金融業이나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는 相互出資를 할 수 있고 出資總額의 制限을 받지 않으나, 그 會社가 取得 또는 所有하는 國內系列會社의 株式에 대하여는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다(新法 7條 5).

5. 共同行爲規制制度의 改善과 課徵金制度의 導入

舊法에서는 事業者나 事業者團體의 共同行爲는 經濟企劃院長官에게 登錄해야 하고, 만일 그러한 共同行爲가 公共의 利益에 반하여 一定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게 되는 경우에는 經濟企劃院長官은 그 登錄을 취소 또는 수정하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共同行爲라고 하더라도 不況克服이나 産業合理化 등 不得已한 事由가 있고 그 當事者가 이것을 立證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었다.

그러나 新法에서는 共同行爲의 規制를 강화하기 위하여 共同行爲의 登錄制를 認可制로 변경하고(新法 11條 1項), 認可를 받지 않은 共同行爲에 대한 是正措置를 明文으로 規定하고(新法 13條), 明示的인 契約이 없는 경우에도 不當한 共同行爲를 規制할 수 있는 法的 根據를 마련하고 있다(新法 11條 3項).

그러나 한편으로는 産業合理化를 위한 共同行爲와 不況克服을 위한 共同行爲 뿐만 아니라, 産業構造의 調整을 위한 共同行爲, 中小企業의 競爭力 強化를 위한 共同行爲 및 去來

條件의 合理化를 위한 共同行爲로 認定하는 規定을 據으로써 適用除外 카르텔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新法 第11條 2項). 이것은 共同行爲의 規制를 완화하는 것이 된다.

新法에 의하면, 經濟企劃院長官은 不當한 共同行爲를 하는 事業者나 事業者團體에 대하여 그러한 行爲의 中止 등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新法 13條), 그러한 事業者나 事業者團體에 대하여 그 違反行爲가 있는 날짜로부터 없어진 날짜에 이르기까지의 期間에 생긴 賣出額의 1%의 범위 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는 制度를 導入하고 있다(新法 14條).

6. 그 밖의 實體規定의 改正

新法은 이 밖에 不公正去來行爲를 規制함에 있어서 事業者가 系列會社 또는 다른 事業者로 하여금 不公正去來行爲를 하도록 하는 行爲도 禁止하고(新法 15條 1項),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가 不當하게 顧客을 誘引하거나 虛偽誇張된 表示, 廣告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自律적으로 公正競爭規約을 만들어서 이를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新法 15條 3項).

또한 改正法은 不當한 共同行爲, 不公正去來行爲 및 再販賣價格 維持行爲를 내용으로 하는 國際契約의 범위를 “1년 이상의 期間에 걸쳐서 계속적인 使用을 목적으로 하는 著作權 導入에 관한 契約”도 포함하도록 하여 不當한 國際契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7. 公正去來委員會의 權限의 弱화

公正去來委員會는 經濟企劃院長官이 이 法에 규정된 중요한 事項과 이 法에 違反되는 事項에 대한 決定, 處分을 하기에 앞서서 이를 審議, 議決하기 위하여 經濟企劃院에 設置된 專擔機構이다(新法 26條).

그런데 新法은 舊法보다도 다음과 같이 公正去來委員會의 權限을 弱화시키고 있다. 舊法에 의하면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令 뿐만 아니라, 適用除外法律의 指定을 위한 法律과 競爭制限의 法令의 制定이나 改正에 관한 事項도 公正去來委員會의 審議, 議決을 거쳐야 한다고 規定되고 있다. 그러나 新法은 適用除外法律의 指定을 위한 法律과 競爭制限의 法令의 制定 또는 改正에 관한 事項을 公正去來委員會가 審議, 議決하는 權限을 削除함으로써(新法 31條) 그 權限을 弱화시키고 있다. 다만 關係行政機關의 長이 競爭制限事項을 內容으로 하는 法令을 制定 또는 改正하거나,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 대하여 競爭制限의 事項을 內容으로 하는 命令, 處分 또는 承認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經濟企劃院長官과 協議를 거치기로 되어 있다(新法 51條).

V. 日本의 經驗

1. 日本의 獨占禁止政策 導入의 背景

1945년에 日本이 포츠담宣言을 수락함으로써 2次大戰이 막을 내리자, 同宣言에서 요구된 日本의 民主主義的 傾向을 復活・強化하기 위하여 일련의 經濟民主化政策이 실시되었다. 즉 勞動部門에서는 勞動者의 團結權을 인정하고 그 地位를 향상시키기 위한 勞動三法이 制定되고, 農業部門에서는 農地改革의 實施와 아울러 農民의 團結과 地位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農業協同組合法이 制定되었다. 그리고 産業部門에서는 各종의 統制團體의 解散, 財閥의 解體와 아울러 獨占禁止法이 制定되는 등 産業의 民主化措置가 취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經濟民主化政策은 軍國主義의 기반으로 된 半封建的, 前近代의인 日本經濟를 平和的이고 民主主義的인 經濟로 改革하고, 近代의이고 合理的인 自由企業制度를 확립하기 위한 聯合軍總司令部의 日本管理政策의 一環이었으며, 그것은 바로 美國의 對日占領政策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獨占禁止政策을 포함하는 日本의 經濟民主化政策은 2次大戰의 終結을 계기로 하여 만들어진 歷史的 產物이라고 볼 수 있다.

2. 日本의 獨占禁止政策의 展開

1947년에 制定된 「私的獨占의 禁止 및 公正去來의 確保에 관한 法律」은 이제 40년에 달하는 施行의 經驗을 가지게 되었다.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을 促進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聯合軍總司令部의 日本經濟民主化政策의 重要한 하나의 支柱로서 第一步를 내딛고, 私的 獨占, 競爭制限行爲 및 不公正한 去來方法의 禁止를 重要한 內容으로 하는 同法은 그 동안 몇 차례의 改正을 經驗하였다.

財閥이 解體되고 獨占禁止法이 制定된 占領時代에는 獨占禁止政策에 대하여 두 가지 見解가 있었다. 그 하나는 終戰 직후였기 때문에 財閥解體와 獨占禁止政策의 實施를 經濟民主化를 위하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였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美國이 日本經濟를 弱化시키고 그 復興을 억제하려는 占領政策이며, 敗戰後의 日本經濟를 위해서는 自由競爭의 도입보다도 企業의 結合 내지 協調가 필요하다는 비판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占領當局은 이러한 비판과는 관계없이 持株會社의 整理, 財閥同族支配의 排除, 經濟力 集中의 抑制, 獨占禁止法의 制定을 실행해 나간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戰後의 日本經濟의 활발한 成長이 입증하는 바와 같이, 財閥解體가 日本經濟의 活力을 損傷시킨다거나, 거대한 財閥이나 獨占企業이 容호되어야 한다는 비판은 타당한 것

이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獨寡占의 排除,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秩序의 유지는 좁은 의미의 經濟問題의 테두리를 벗어난 經濟的 民主主義를 위하여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역사적 움직임은 東西對立의 激化라는 國際環境의 변화로 1948년경부터 변질하게 되었다. 美日關係가 옛날의 敵으로부터 파트너의 관계로 바뀌자, 「過渡經濟力 集中 排除法」에 의하여 初期에는 325個 大企業이 再編成의 對象企業으로 指定되었으나 결국 18個社가 1948년부터 1950년 사이에 指定되고, 實質的으로 再編成된 企業은 11個社에 불과하였다. 經濟力의 集中排除가 金融業을 포함하여 보다 더 철저했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단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東西對立과 韓國戰爭이 日本經濟의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1946년 4월 12일에 公布된 日本의 獨占禁止法은 聯合軍이 日本의 經濟民主化의 一環으로서 獨占禁止政策을 實現하기 위하여 制定된 것이다. 그러나 外部로부터 주어진 日本의 獨占禁止政策이 진정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것은 1952년 이후부터이다. 이때부터 1960년경에 이르기까지는 당초의 法律에 規定된 獨占禁止政策의 後退 내지 완화의 時期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政策의 後退가 大企業의 利益만을 위한 것이었는가, 또는 엄격한 기준의 獨占禁止法을 日本經濟의 實情에 맞추어 現實化한 것이었는가는 論者에 따라서 견해가 相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期間에 獨占禁止政策이 後退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1949년에는 企業結合과 國際契約의 規制를 緩和한 獨占禁止法의 1次改正이 있었고, 둘째로 1952년에는 카르텔의 適用除外를 規定한 中小企業安定法과 輸出去來法 등이 制定되었다. 그리고 셋째로 1953년에는 不況카르텔과 合理化카르텔을 認定하고, 不當한 事業能力較差의 排除에 관한 規定을 削除하고, 事業者團體法을 廢止하여 그 축소된 內容을 本法에 吸收하고, 持株會社 禁止規定을 緩和하고, 再販賣價格 維持制度를 일정한 條件下에서 認定함으로써 日本의 獨占禁止政策을 原則禁止主義로부터 弊害規制主義의 方向으로 크게 轉換한 獨占禁止法의 2次改正이 있었다. 또한 네째로, 1952년부터는 政府의 行政指導에 의한 勸告操業短縮이 登場하여 國家의 權力을 배경으로 하는 일종의 強制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로, 公正去來委員會는 다수의 審査事件을 不問에 불임으로써 獨占禁止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였다. 이 時期의 獨占禁止政策이 低調했다는 사실은 1958년에 그 法을 有名無實하게 만들려는 改正案이 나왔었다는 것으로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로 日本經濟는 高度의 成長을 하는 한편으로 企業의 大型化, 企業

集團의 支配力擴大, 市場構造의 寡占化 및 協調의 行動 등에 의한 피해를 크게 露呈하게 되었다. 이러한 事情을 배경으로 하여 日本의 獨占禁止法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強化하는 方向으로 改正하기 위한 論議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 改正에 관한 積極적인 論議는 1973년 이후로 各界로부터 전개되었으며, 1977년에는 마침내 제 3 차의 大改正이 이루어졌다.

그 改正의 주요한 내용은, (i) 事業者의 不當한 國際的 카르텔에 대한 課徵金의 賦課(7條 2), (ii) 獨占의 狀態에 대한 競爭回復措置(8條 4), (iii) 大規模事業者의 株式保有總額의 制限(9條 2), (iv) 價格의 同調의 引上에 관한 報告의 徵收(18條 2)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日本의 獨占禁止政策은 이 法改正에 의하여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民間企業의 競爭을 어느 정도로 촉진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獨占과 協調를 어느 정도로 容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經濟學, 政治學, 哲學 등 모든 分野를 필요로 할 것이다. 사실 日本에서는 過當競爭의 피해를 주장하고, 獨占禁止法은 産業基盤의 造成, 輸出의 伸張, 業界의 協調體制를 저해한다는 의견이 表明되기가 일쑤였고, 國民一般도 不當表示나 廣告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獨占問題에 관해서는 무관심이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自由主義의 哲學, 民主主義의 政治學, 近代的인 經濟學이 깊은 뿌리를 박고 있지 않았던 日本의 環境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自由競爭에 무관심한 風土에서 獨占禁止法을 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日本의 獨占禁止政策은 제 3 차의 改正으로 強化되었다. 그러나 經濟政策의 커다란 支柱로서의 獨占禁止政策의 위치는 40년이 경과한 오늘날에 있어서도 아직 확고부동한 것은 아니다. 獨占禁止法이 日本의 經濟的 現實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되풀이해서 獨占禁止制度를 完화하려는 압력으로 될 것이다. 制度로서의 日本의 獨占禁止法은 일단 定着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日本에 더욱 확고한 뿌리를 박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지는 중요한 政治的, 經濟的 意義가 더욱 명확하게 이해되고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八幡, 富士 및 王子系 3社의 이른바 「大型合併」의 문제가 제기된 1968년에 日本의 유수한 近代經濟學者 104명은 「大型合併에 관한 意見書」를 公表한 바 있다. 筆者는 그 중에서 日本의 獨占禁止政策에 대한 近代經濟學者들의 基本的 認識을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部分을 引用하여 하나의 敎訓으로 삼고자 한다.

“企業間的 競爭은, 다만 資源의 最適配分을 달성할 뿐 아니라, 技術이나 經營의 부단한 革新을 촉진하는 것에 의하여, 經濟發展의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戰後 日本의

經濟發展도, 舊財閥이 解體되고 獨占禁止法이 실시된 것을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하여 競爭이 활발하게 행하여진 것에 힘입은 바가 매우 크다. 만약 現行의 獨占禁止法을 변경 또는 유명무실화하는 것에 의하여, 여러가지 競爭制限이나 私的 獨占을 인정하려고 한다면, 이와 같은 日本經濟의 원동력은 마침내 쇠퇴하고, 今후의 日本의 經濟社會의 健全하고 民主的인 發展은 증대한 장애에 직면하리라고 생각된다. 될 수 있는 한 競爭條件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獨占禁止法의 精神이기도 하지만, 이는 또한 發展하는 經濟의 基本적 原則이어야 한다.”

VI. 公正去來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公正去來政策이 1975년에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部分的으로 導入되고, 1980년에는 「獨占禁止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본격적인 制度的 基盤을 확립하였으며, 1986년에는 同法이 企業集團의 經濟力 集中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한 內容으로 하여 크게 改正된 것을 보았다. 그러나 競爭을 촉진하여 市場經濟를 活性化시키기 위한 經濟秩序에 관한 經濟政策으로서, 公正去來政策이 韓國經濟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은, 앞에서 고찰한 日本의 경우를 보더라도 용이한 일은 아니다. 現行 公正去來法의 規定과 이제까지의 施行經驗에 비추어서 우리나라의 公正去來政策의 문제점과 그 改善方向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現行法의 實體規定의 補完

첫째로 現行法은 일정한 企業集團에 속하는 系列企業의 出資總額을 劃一的으로 制限하고 系列企業間의 직접적 相互株 保有를 전면적으로 禁止하고 있다. 이것은 架空의 出資에 의한 過多한 銀行貸出로 企業集團이 大型化하고 多角化하는 것을 抑制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構造規制는 지나치게 形式的이고 엄격하여 企業의 投資活動과 市場競爭을 阻害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所有集中의 側面 뿐만 아니라 成長과 效率의 側面도 고려하여 企業集團을 보다 더 合理的으로 規制하는 方案이 補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企業集團의 構造와 行動 및 成果에 대한 보다 더 實證的인 研究가 필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現在 推進되고 있는 企業集團 規制의 具體的 內容도 公開하여 이러한 研究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同法은 市場支配의 事業者를 指定하고 그 濫用行爲를 禁止하는 規定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 規定을 違反하여 是正措置를 받은 주요한 事件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同規定은 死文化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公正去來政策이 獨占禁止政策으로서의 구실을 다하기 위해서도, 政策當局은 市場支配의 事業者의 濫用行爲를 보다 더 철저하게 監視하고 規制하여야 할 뿐 아니라, 企業分割과 같은 構造規制도 制度化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로, 現行法은 一定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는 企業合併을 禁止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巨大合併이 公正去來委員會의 審議를 거치지 않고 公正去來室에 의하여 認定되고 있고 많은 경우에 特別法에 의하여 이것이 助長 내지 認定되고 있다. 企業合併은 規模의 經濟性을 實現하기도 하지만 經濟力의 集中을 가져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合併指針을 만들어서 이것을 公表하고, 不當한 合併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規制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政策當局은 小規模 事業者나 事業者團體의 明示의 共同行爲는 엄격하게 規制하고, 大規模 事業者나 事業者團體의 陰性的 共同行爲에 대하여는 寬大하였다. 뿐만 아니라 新法에서는 適用除外카르텔의 種류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특히 大規模 事業者나 事業者團體의 陰性的 共同行爲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規制하고, 擴大된 適用除外카르텔을 認定하는 데 신중을 期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企業의 誇張廣告와 再販賣價格 維持行爲와 같은 不公正去來行爲는 現行法에 의하여 規制對象으로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過多한 商品廣告와 企業廣告가 행하여지고, 勸獎消費者價格 또는 標準小賣價格의 형태로 類似再販賣價格 維持行爲가 各종의 事業分野에서 盛行하고 있다. 이러한 不公正去來行爲는 進入을 沮害하고 市場支配력을 強化하는 원인으로 되므로, 이것을 보다 더 강력하게 規制하는 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2. 公正去來委員會의 獨立

公正去來委員會는 經濟企劃院長官이 이 法에 規定된 중요한 事項과 이 法에 違反되는 事項을 決定, 處分하기에 앞서서 이를 審議, 議決하기 위하여 同法에 根據하여 設置된 機構이고, 公正去來室은 同法에 規定된 事項을 執行하기 위하여 經濟企劃院職制에 根據하여 設置된 機構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同法違反事件에 대한 認知와 調査, 그리고 그것을 不問處分할 것인가, 是正勸告를 할 것인가, 또는 公正去來委員會의 審決에 附議할 것인가에 대한 一次的인 決定은 公正去來室의 判斷에 달려 있고, 違反事件에 대한 事後管理도 公正去來室의 所管으로 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公正去來政策이 市場經濟秩序에 관한 基本法으로서 그 機能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日本이나 美國의 先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公正去來委員會를 獨立된 準司法의 行政委員會로 하고, 公正去來室의 所管業務도 管掌케 하여

야 할 것이다.

3. 産業政策과의 調和

그동안 特別法 爲主로 推進되어 온 産業政策은 少數의 特定企業이 保護를 받고 市場을 支配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하여 經濟가 運營되기 위해서는 獨寡占을 助長하고 競爭을 制限하는 既存의 諸般 法令이나 制度를 整理하는 措置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새로운 競爭制限의 法令이나 制度가 만들어지는 것을 防止하고 産業政策이 競爭促進政策과 調和를 가져오도록 公正去來委員會가 그러한 法令의 制定에 協助하는 制度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4. 産業組織 및 獨占禁止政策에 관한 研究의 推進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巨視經濟政策에 이용될 수 있는 財政, 金融 및 國民所得에 관한 統計資料와 이것에 관한 研究는 그 동안 크게 進展을 보이고 있으나, 公正去來政策의 遂行에 필요한 企業과 産業 및 企業集團에 관한 統計資料와 産業組織論的 研究는 매우 불충분하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公正去來政策을 적극적으로 推進하는 데 커다란 障鄣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産業組織과 市場構造에 관한 基本統計를 作成·公開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産業組織의 構造와 行動 및 成果에 관하여 理論的 및 實證的으로 研究하는 일은 앞으로 公正去來政策의 定着과 發展을 위해서나, 市場經濟制度에 대한 國民的 合意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 ✓ 經濟企劃院,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關係法規集』, 1988.
- ✓ 經濟企劃院,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法 審決集』, I, II, III, IV, V, VI 卷
- ✓ 公正取引委員會 事務局, 『獨占禁止法關係法令集』, 昭和 61年.
- ✓ 公正取引委員會 事務局, 『獨占禁止政策 三十年史』, 昭和 52年.
- ✓ 金基台, 「韓國獨占禁止政策의 方向」, 韓國産業組織學會 學術大會 發表論文, 1985, 11.
- ✓ 李奎億, 『市場構造와 獨寡占規制』, 1977.
- 丁炳休, 「日本の 獨占禁止政策研究」, 『經濟論集』, 第12卷 第1號, 1973, 3.
- 丁炳休, 「韓國의 獨寡占規制政策에 관한 考察」, 『經濟論集』, 第21卷 第3號, 1982, 9.

丁炳休, 「韓國의 獨占禁止政策의 展開의 課題」, 『經濟論集』, 第23卷 第4號, 1984, 12.

丁炳休, 「公正去來法 違反事件에 관한 考察」, 『經濟論集』, 第24卷 第3號, 1985, 9.

丁炳休, 「韓國의 經濟力集中과 獨占禁止政策」, 『經濟學研究』, 第34輯, 1986, 12.